

 신안산대학교	교육품질위원회에 관한 운영규정	규정번호	4-1-35
		제정일자	2016. 2. 5.
		개정일자	2024.3.20.
		책임부서/팀·계	교무처

<2021.08.20.개정>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신안산대학교의 교육품질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기능) 신안산대학교의 교육품질위원회(이하 '위원회'라 한다)는 교육과정의 운영과 다음 각 호에 관련한 사항을 심의한다. <2019.11.14.개정>

1.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연구 및 평가
2. 학과의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성과 및 만족도 평가
3. 강의평가 지표 및 제도에 관한 사항 평가
4. 그 밖에 교육과정 평가에 필요한 사항

제3조 (구성) ① 위원회는 교무처장과 본 대학 전임교원 및 산업체 인사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는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<2017.02.14.개정> <2021.08.20.개정><2023. 3. 30. 개정><2024.3.20.개정>

②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되고 위원장의 추천에 의하여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.

<2017.02.14.개정> <2019.12.18.개정> <2021.08.20.개정><2023. 3. 30. 개정><2024.3.20. 개정>

③ 위원구성 시 반드시 산업체 임직원을 구성하도록 하며 전체위원의 1/3이상으로 한다.

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2019.12.18.개정>

제4조 (임기)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장은 보직재임기간으로 한다. <2019.12.18.개정>

제5조 (회의)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며, 회의의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제6조 (간사와 서기) 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제반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지명한다.

제7조 (소위원회) 학과 교육과정 평가 및 개선을 위하여 학과 교육품질위원회를 둔다.

제8조 (학과 교육품질위원회) ① 학과 교육품질위원회는 학과의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대한 성과를 자체평가를 수행하며 지속적인 교육품질향상을 위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도록 한다.

② 위원장은 학과장으로 하며, 위원은 학과의 전임교원으로 구성한다. <2020.09.24.개정>

③ 학과 교육품질위원회에서 수행한 업무는 교육품질위원회에서 심의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6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4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.